

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[2003. 12. 15
조례 제82호]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264호
일부개정 2017. 12. 28 조례 제791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8. 11. 30 조례 제832호
일부개정 2020. 8. 7 조례 제931호
(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
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8. 11. 30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농공단지조성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농공단지 편입용지의 매입
2. 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진입도로개설
3. 농공단지 내 전기, 통신, 용수개발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

[전문개정 2018. 11. 30]

제3조(회계연도)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4조(세입)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수금
2. 기채자금
3.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조금
4. 분양용지 매각대금
5.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
6. 그 밖의 수입

[전문개정 2018. 11. 30]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지매입비 및 이와 관련한 보상비용
2. 농공단지 시공비 및 부대시설비
3. 기채상환금
4.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

[전문개정 2018. 11. 30]

제5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1. 30]
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「증평균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20. 8. 7]

제7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8. 11. 30]

[제목개정 2020. 8. 7]

제8조(융자 및 보조) ①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.

1.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
2.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“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”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9조(금고의 설치)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10조(융자조건 등)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을 영구 보존

한다.

② 특별회계 자금의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제11조(할부금)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용자조건에 따라 월별,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.

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 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8. 11. 30]

제13조(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)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제14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15조(감독)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12. 28 조례 제791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1. 30 조례 제83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8. 7 조례 제931호,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
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농공단지조성사업비용자금상환대장

○ 단 지 명 :

No.

업 체 명		대 표 자	
위 치		입 주 일	
부지면적		건축면적	
용 자 액	원		
거치기간	. . . ~ . . .		
상환기간	. . . ~ . . .		

○용자금 상환

년 월 일	상 환 액					잔 액	비 고
	계	원 금	이 자	연 체 이 자			
				일 수	금 액		